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7년도 구미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구미시 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62백만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가. 출연 개요

주관부서	세무과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27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2,877천원(시비 62,877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16년 예산액</th><th rowspan="2">2017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tr><th>계</th><th>국비</th><th>도비</th><th>시비</th><th>기타</th></tr><tr><td>합 계</td><td>1년</td><td>51,519</td><td>62,877</td><td>62,877</td><td></td><td></td><td>62,877</td><td></td></tr><tr><td>기관 운영비</td><td>1년</td><td>32,457</td><td>39,613</td><td>39,613</td><td></td><td></td><td>39,613</td><td></td></tr><tr><td>주요 사업비</td><td>1년</td><td>19,062</td><td>23,264</td><td>23,264</td><td></td><td></td><td>23,264</td><td></td></tr><tr><td>연구사업</td><td>1년</td><td>12,365</td><td>15,090</td><td>15,090</td><td></td><td></td><td>15,090</td><td></td></tr><tr><td>자치단체지원</td><td>1년</td><td>6,697</td><td>8,174</td><td>8,174</td><td></td><td></td><td>8,174</td><td></td></tr></table>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 계	1년	51,519	62,877	62,877			62,877		기관 운영비	1년	32,457	39,613	39,613			39,613		주요 사업비	1년	19,062	23,264	23,264			23,264		연구사업	1년	12,365	15,090	15,090			15,090		자치단체지원	1년	6,697	8,174	8,174			8,174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 계	1년	51,519	62,877	62,877			62,877																																																					
기관 운영비	1년	32,457	39,613	39,613			39,613																																																					
주요 사업비	1년	19,062	23,264	23,264			23,264																																																					
연구사업	1년	12,365	15,090	15,090			15,090																																																					
자치단체지원	1년	6,697	8,174	8,174			8,174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도감독 부서인견 (중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음. 시·도 연구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가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무행정 이행 방안의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지방세의 이론이나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에 대한 기본 틀의 제안과 지방세목 중 탄력세율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합 계	48,591	51,519	62,877	62,877	-	11,358
연구사업	9,718	12,365	15,090	15,090	-	2,726
자치단체지원사업	3,887	6,697	8,174	8,174	-	1,477
기관운영 (인건비, 경상비 등)	34,986	32,457	39,613	39,613	-	7,156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다. 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3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기관형태 (출자, 출연)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출 연		
인원현황 (‘16.0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6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견되거나 당연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18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임 원 (‘16.05.10.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6.02.28~2017.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이○○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광역시 재정기획관		2016.02.28~2017.02.27	
	이 사	김○○	○○도 자치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도 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오○○	○○도 ○○군 부군수		2016.02.28~2017.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 지 지자체가 출자·출연 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6,665 (자산 총액)
	예산액 ²⁾	8,315	7,518	8,406		6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7,712	7,198	8,276		6,60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425			5,990		1,435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라.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과		출연	62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6년:8,406백만원) 중 98.4%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62백만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205	25	38	43	48	51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소관 실·과		세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영 활
	담 당	엄 기 득
	담 당 자	문 영 후 (480-6858)